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K-EV100) 가이드라인

2023. 3.



목 차

1. 사업 개요	1
2. 적용 대상	2
3. 지원 사항	3
4. 사업 추진체계	4
5. 무공해차 전환 실적 적용방안	7
6. 자주 묻는 질문	9
7. 별지	12

1. 목적

-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의 추진을 위한 참여방법, 책무,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2항*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 * 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용어 정의

-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 2030년까지 기업의 보유·임차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이행
- 무공해자동차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참여기업 :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참여를 위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기업
- 임차 : 비용(유·무상)을 지불하고 타기관 또는 렌트카 업체 등으로 부터 자동차를 대여하여 사용

1. 참여기업 조건

-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임차 포함)하고 있는 민간기업*
 - * 다만,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임차한 기업은 '25년까지 우선 전환을 조건으로 K-EV100 참여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은 참여 불가
 - *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정부출연기관법, 과기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법, 공기업민영화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기관

2. 참여기업의 책무

- (공개 선언) '30년까지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이행할 것을 선언
 - * ①은 필수조건, ②~⑤은 선택사항

- ① 기업이 보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
 - *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관리하는 차량 대상(지입차량 등은 제외)
 - ** 무공해차종 미출시, 산간·오지 이동차량, 특수자동차 등 예외사항은 제외
- ② 기업 CEO 업무차량부터 전기·수소차로 우선 전환
- ③ 전 사업장에 충전인프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EV 사용 지원
- ④ 전 사업장에 충전인프라를 설치하여 고객들의 EV 사용 지원
- ⑤ 서비스 계약(택시 등) 시 전기차 사용할 것을 요구

- (정기 보고) 환경부에 정기적으로 무공해차 전환계획과 실적 제출
 - ① (중장기 로드맵)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환계획(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
 - ② (전환계획) 당해연도 무공해차 구매·임차계획(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
 - ③ (실적보고서) 당해연도 구매·임차실적(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

1. 구매보조금 지원

- 전체 예산 중 일부를 법인·기관 대상 보조금 예산으로 별도로 배정하여 K-EV100 참여기업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2.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 '23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사업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우선 지원

1. 추진 절차 개요

절차	주요 내용	비고 (일정 등)
① 신청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가입신청서 제출 (참여 희망기업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수시 접수 ▶ 별지 제1, 3, 4호 서식 제출 필수
↓		
② 가입	가입 검토 및 선정 알림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참여기업)	▶ 최대 45일 소요
↓		
③ 공표	'22년 전환실적 및 '23년 이행계획 공표 (환경부)	▶ '23.1분기
↓		
④ 지원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참여기업 → 해당사업에 지원)	▶ '23.2~3월(무공해차 브랜드사업)
↓		
⑤ 구매·임차	무공해차 구매·임차 및 구매 지원 (참여기업·환경부·지자체)	▶ 연중 지속 ※ 환경부 「2023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⑥ 실적 제출	'23년 무공해차 전환실적 실적보고서 제출 (참여기업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4.1분기 ▶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		
⑦ 성과 발표	'23년 K-EV100 전환 성과 평가 및 공표 (환경부)	▶ '24.1분기

2. 세부 추진사항

< ① 가입 신청 및 선정 >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가입신청서를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참여 희망기업의 현황, 조건, 계획 등 가입 적절성을 검토하여 환경부가 승인(별지 제2호 서식)

< ② 무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 제출 >

- 참여기업은 가입신청서와 함께 당해 회계연도의 자동차 보유현황과 증장기 전환계획 등을 포함한 「증장기 전환로드맵」과 당해 회계연도의 무공해차 구매·임차계획을 담은 「당해연도 무공해차 전환계획」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별지 제3, 4호 서식)
 - * 「당해연도 무공해차 전환계획」은 가입 후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제출 필요
- 환경부는 참여기업이 제출한 증장기 전환로드맵과 전환계획을 최종 확인한 후에 추가정보나 수정을 요청하거나 대외 홍보할 수 있음

< ③ 무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제출 >

- 참여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구매·임차 실적을 담은 「실적보고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환경부는 참여기업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최종 확인한 후에 추가 정보나 수정을 요청하거나 대외 홍보할 수 있음

< ④ 구매보조금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

-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지침」 준용

3.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총괄
-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 참여기업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설치 등 지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사무국 운영
- 참여기업 무공해차 전환 관련 통계 관리
- 참여기업 홍보, 정책 간담회 등 개최
- 참여기업 중장기 전환 로드맵, 전환계획 및 이행결과 등 점검
- 참여기업 지원사항 수요조사, 검토 등
- 기타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참여기업

- 무공해차 전환 및 충전인프라 설치
- 이행계획 수립 및 전환실적 보고 등

1. 무공해차 전환실적 계산

- 무공해차 전환실적은 비율로 산정하여 계산

$$\text{무공해차 전환실적(\%)} = \frac{\text{해당기업이 보유·임차하고 있는 무공해차 총 대수}}{\text{해당기업이 보유·임차하고 있는 자동차 총 대수}} \times 100$$

- 분자는 기업이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무공해자동차의 총 대수 기재
- 분모는 기업이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전체 자동차의 총 대수를 기재하되, 제외차종*은 포함하지 않고 기재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외차종) 준용

산정 예시

- A기업(총55대 보유, 5대 제외차종)이 계획연도에 자동차를 7대 구매, 4대 임차하는 경우

구분	차종	대수	실적 계산	환산 대수
구매	수소 승용(1종)	3대	○	3대
	전기 화물(1종)	4대	○	4대
임차	전기 승용(1종)	4대	○	4대

$$\frac{(\text{수소차구매 3대}) + (\text{전기차구매 4대}) + (\text{전기차임차 4대})}{(55\text{대} - 5\text{대})} \times 100 = 22\%$$

∴ 최종 산정된 무공해차 전환비율은 22%

※ 백분을 산정 시 산정결과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백분을 산정

2. 제외 차종

- 무공해차가 미출시되었거나, 특수차량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어려운 차종은 전체 실적에서 제외*

* 향후에 해당 차종으로 무공해차 출시될 경우에 포함 가능

- 제외차종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의 제외차종 항목을 준용*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외차종) 준용

(증빙서류는 이행실적을 담은 실적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제외 차종		기한	증빙
자동차		-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동차환경 협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 확인 - 사용 목적이 특수하여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
승합 자동차	일반형(경·소·중형)	2023.12.3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형별 세부기준 조회 및 확인 (자동차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로 조회) ※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구조변경 등 제외 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등으로 증빙
	특수형	2025.12.31	
화물 자동차	덤프형	2025.12.31	
	밴형	2025.12.31	
	특수용도형 (청소차 제외)	2025.12.31	
특수자동차		-	
"폭발위험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유자동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 이용목적 및 운행 장소가 명확히 들어간 자동차 구매계획 결재 문서

Q1. K-EV100 참여시,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혜택은?

- K-EV100 참여업체에 법인·기관 물량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과 차종별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확인 가능

Q2. K-EV100 참여시, 구체적인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혜택은?

- (전기충전기) '23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사업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우선 지원
- (수소충전소) 설치비의 50%를 지원할 예정(버스 등 특수충전소는 70%)

※ 개방 범위 :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공용

< (참고) 충전인프라 지원비용 >

- ▶전기차 완속충전기 : 약 140만원(기준 : 7kW)
- ▶전기차 중속충전기 : 약 500만원(기준 : 30kW)
- ▶전기차 급속충전기 : 약 2,000만원(기준 : 100kW)
- ▶수소충전소 : (일반1기) 15억원 (일반2기) 25억원/ (특수2기) 42억원/ (액화) 70억원

※ 보다 정확한 충전인프라 지원비용은 당해연도 환경부 보조사업 지침을 참고

Q3. 공공기관도 참여 가능한지?

- 동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의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참여는 불가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법, 지방공기업법, 정부출연기관법, 과기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법, 공기업 민영화법에 따른 기관

Q4. 물류·유통사 등의 지입차량, 사내 출퇴근용 버스 등도 전환대상인지?

- 기업이 소유·임차한 차량만 전환대상이며, 위탁 또는 수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의무대상이 아님
- 다만, 참여기업은 계약시 무공해차를 사용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Q5. 참여기업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중장기 로드맵, 전환계획, 실적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 별지 제3~5호 서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 (중장기 로드맵) 2030년까지의 중장기로드맵(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
 - (전환계획) 당해연도 무공해차 구매·임차계획(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
- ※ 가입 이후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제출
- (실적보고서) 당해연도 무공해차 구매·임차실적(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

Q6. 기업의 이행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기업별로 제출한 실적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
- 매년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성과 홍보(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Q7. 무공해차 전환 미이행시 불이익(페널티)은 없는지?

-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참여기업의 보급실적을 매년 공표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미이행 등 부적절 사유 발생시 자격 박탈 예정

< (참고) 가입약관 >

제6조 (자격 박탈) ①참여기업이 K-EV100의 목표, 신뢰성을 손상시키거나 평판을 실추시킬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 K-EV100 참여기업으로서의 요건 및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시) 중장기 전환 로드맵, 당해연도 무공해차 전환계획,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2. 전기·수소차보다 내연기관차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전기·수소차 도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업이 공개선언한 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범죄 등 부정적 행위에 연루된 경우
6. 그 밖에 K-EV100 참여 관련하여 캠페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가입신청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가입신청서

[회사 이름 기입]는 수송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보유·임차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100% 전환하는 운동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가입을 신청합니다.

I. 목표

- 우리 회사는 [2030년/2025년]까지 현재 보유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100%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한다.

II. 가입 조건

- 우리 회사는 아래 사항을 [2030년/2025년]까지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우리 회사가 보유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100% 전환
 - 기업 CEO 업무차량부터 전기·수소차로 우선 전환
 - 전 사업장에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전기·수소차 사용 지원
 - 전 사업장에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설치하여 고객들의 전기·수소차 사용 지원
 - 서비스 계약 시, 전기·수소차를 사용할 것을 요구

III. 서명

- 회사 : 기업명
- 직위 / 서명인 : 대표이사 황진이
- 서명 : (대표자 수기 서명 또는 직인)
- 일자 : 2021년 2월 00일

IV. 연락처 정보

※ 연락처 정보는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추진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예정

구분	이름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	황진이	사장		ev@gmail.com
담당자	홍길동	부장		

※ 참여기업 담당자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가이드라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V. 회사 정보

※ 회사 정보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의 가입회사 프로필과 연례 보고서 등에 사용될 예정

※ 기업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참여기업 대상 프로모션 혜택 지원을 위해 참여기업 간 공유 예정

기업명	기업명	설립년도	2000년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	업종	제조업/유통업
법인 등록번호	000-0000		
주소	(-) 00시 00구		
매출액	000,000백만원	종업원 수	0,000명
보유 차량	전체	전체 000대 (보유 000대, 임차 000대)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차 00대 (보유 00대, 임차 00대)	
	무공해차	전기차 00대 (보유 00대, 임차 00대)	
		수소차 00대 (보유 00대, 임차 00대)	

VI. 회사 로고

- 우리 회사는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관한 홍보 목적을 위해 웹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본 회사의 로고를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VII. 가입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추진을 위해 필요한 참여 기업의 조건, 가입기준, 의무사항과 지원내용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 2030년까지 100% 전기차·수소차 전환을 공개 선언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업프로그램(이하 “K-EV100”이라 한다)
2. 무공해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제52조의3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3. 임차 : 비용(유·무상)을 지불하고 타기관 또는 렌트카 업체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임대(대여)하여 사용
4. 모회사와 자회사 :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 및 자회사

제3조 (참여대상) ①K-EV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5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기업
2.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기업이 참여할 경우, ‘25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선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는 참여기업이 기업 집단(모회사와 자회사) 차원에서 K-EV100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는 별도로 K-EV100에 가입할 수 있다.

1. 모회사와 분명히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2. 보유·임차하는 차량이 50대를 초과하는 경우(10대 이상 보유·임차기업은 ‘25년까지 100% 조기 전환 선언시 참여 가능)

제4조 (가입 기준) K-EV100에 가입하는 모든 기업은 2030년까지 자신이 보유·임차하는 차량을 무공해차로 100%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하며, 다음 기준들을 선택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1. 기업 CEO 업무차량부터 전기·수소차로 우선 전환
2. 사업장에 무공해자동차 충전인프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무공해차 사용 지원
3. 사업장에 무공해자동차 충전인프라를 설치하여 고객들의 무공해차 사용 지원
4. 서비스 계약 시, 무공해자동차를 사용할 것을 요구

제5조 (참여기업의 제출의무) ① 참여기업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환로드맵을 수립하여 가입신청서와 함께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중장기 전환로드맵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030년까지 100%
2. 2028년까지 70% 이상
3. 2025년까지 30% 이상

② 참여기업은 K-EV100에 가입신청서와 함께 당해연도 무공해차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매년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전환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전환계획에 따른 무공해차 구매·임차실적 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전환실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는 참여기업의 전환계획과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중장기 전환로드맵, 전환계획, 실적보고서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6조 (자격 박탈) ① 참여기업이 K-EV100의 목표, 신뢰성을 손상시키거나 평판을 실추시킬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 K-EV100 참여기업으로서의 요건 및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시) 중장기 전환 로드맵, 당해연도 무공해차 전환계획,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2. 전기·수소차보다 내연기관차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전기·수소차 도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업이 공개선언한 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범죄 등 부정적 행위에 연루된 경우
6. 그 밖에 K-EV100 참여 관련하여 캠페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는 보조금, 충전인프라 등 지원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항) 환경부는 참여기업의 적극적인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하고 전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공해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2. 사업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제8조 (성과 평가) 환경부는 실적보고서를 통해 참여기업의 전환계획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참여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 ① “환경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기업들의 K-EV100 가입 및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환경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임직원 각 1명을 포함 하며, 무공해차 모빌리티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 ③ “운영위원회”는 K-EV100 가입 및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가 기업에게 K-EV100 철수를 권고할 경우, 그 기업에게 회원으로 존속할 근거를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 0000 - 0000 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기업 승인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주 소 :

위 기업은 대기환경 개선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보유·임차차량을 무공해자동차로 100% 전환할 것을 약속한 기업으로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지정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별지 제3호 서식] 중장기 전환 로드맵

중장기 전환 로드맵

기업명		환경부				제출년도		2023년	
무공해차 전환목표(2030년)								100%	
무공해차 전환목표(2028년)								70%	
무공해차 전환목표(2025년)								30%	
단계	연도	무공해차 구매·임차				충전인프라 구축			
		(누적) 전환율	전환율	전기차(대)	수소차	완속	급속	수소충전소	
1단계	'21년	5%	5%	1,000	10	100	10	1	
	'22년	10%	5%	1,000	10	100	10	1	
	'23년	15%	5%	1,000	10	100	10	1	
	'24년	20%	10%	1,000	10	100	10	1	
	'25년	30%	10%	1,000	10	100	10	1	
2단계	'26년	40%	10%	1,000	10	100	10	1	
	'27년	50%	20%	1,000	10	100	10	1	
	'28년	70%	20%	1,000	10	100	10	1	
3단계	'29년	90%	10%	1,000	10	100	10	1	
	'30년	100%	10%	1,000	10	100	10	1	
합계				10,000	100	1,000	100	10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중장기 전환로드맵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홍길동 (인)

2023년 무공해차 전환계획

기업명	<i>환경부</i>	기준년도	2023년	
현황	전체차량	합계	<i>00대</i>	
		보유	<i>00대</i>	
		임차	<i>00대</i>	
	무공해차	합계		<i>00대 (00%)</i>
		전기차	보유	승용 00대 화물 00대 버스 00대 등
			임차	승용 00대 화물 00대 버스 00대 등
		수소차	보유	승용 00대 화물 00대 버스 00대 등
	임차		승용 00대 화물 00대 버스 00대 등	
	내연기관차	합계		<i>00대 (00%)</i>
		보유		<i>00대</i>
임차		<i>00대</i>		
계획	무공해차 전환계획(당해연도)		<i>00% (무공해차 / 전체차량)</i>	
	내연기관차 구매	합계	<i>00대</i>	
		구매	<i>00대</i>	
		임차	<i>00대</i>	
	무공해차 구매	합계		<i>00대</i>
		전기차	구매	승용 00대 화물 00대 버스 00대 등
			임차	승용 00대 화물 00대 버스 00대 등
		수소차	구매	승용 00대 화물 00대 버스 00대 등
	임차		승용 00대 화물 00대 버스 00대 등	
	충전인프라 구축	합계		<i>00대</i>
		전기차 충전기	완속	<i>00대</i>
			급속	<i>00대</i>
	수소충전소		<i>00대</i>	
내연기관차 처분		<i>00대</i>		
계약시, 무공해차 사용 요구	계약건수	총 요구대수		
	<i>00건</i>	<i>00대</i>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당해연도 무공해차 전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홍 길 동 (인)

2023년 실적보고서

기업명	<i>환경부</i>		기준년도	<i>2023년</i>		
무공해차 전환실적(당해연도)				<i>00%</i>		
무공해차 전환실적(누적)				<i>00%</i>		
구분			전환계획	전환실적	달성률	
실 적	무공해차 구매	계		<i>00대</i>	<i>00대</i>	<i>(실적/계획)%</i>
		전기차	보유	<i>00대</i>	<i>00대</i>	<i>(실적/계획)%</i>
			임차*	<i>00대</i>	<i>00대</i>	<i>(실적/계획)%</i>
		수소차	보유	<i>00대</i>	<i>00대</i>	<i>(실적/계획)%</i>
			임차*	<i>00대</i>	<i>00대</i>	<i>(실적/계획)%</i>
		충전인프라 구축	계		<i>00대</i>	<i>00대</i>
	전기차 충전기		완속	<i>00대</i>	<i>00대</i>	<i>(실적/계획)%</i>
			급속	<i>00대</i>	<i>00대</i>	<i>(실적/계획)%</i>
	수소충전소		<i>00대</i>	<i>00대</i>	<i>(실적/계획)%</i>	
	계약시, 무공해차 사용 요구	계약건수		총 요구대수		
		<i>00건</i>		<i>00대</i>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0000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무공해차 사용 요구 리스트(계약기업명, 계약명, 계약일, 요구대수 등 포함)

년 월 일

대 표 : 홍 길 동 (인)

무공해차 사용 요구 리스트

기업명		<i>환경부</i>		기준년도	<i>2023년</i>
번호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명	무공해차 대수	
1	<i>자동차환경협회</i>	<i>21.1.27</i>	<i>"00000 제품" 핵심 부품 납품 계약건</i>	<i>00대</i>	
2					
3					
4					
5					
6					
7					
8					
9					

[별지 제6호 서식] 제외차종 요청 사유서

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제외 요청 사유서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및 e-mail	
자동차 정보	차량명	차종 및 유형	
	자동차등록번호	연료종류	
	제원관리번호	구매·임차일	
구매·임차 사유			
<p>『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제외차종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위 자동차에 대한 제외차 규정 적용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관인) </p>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명</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p>			
<p>※ 첨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차 요청 사유 설명자료 ○부 - 기타 증빙자료 ○부 			

